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978 |
|------|-----|

2023. 9. 08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8일, 박석 의원(찬성자 30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9.7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석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<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>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

책임성을 강화하고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 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(안 제10조의2)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### 나. 직장운동경기부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

#### 1) 현황

- 직장운동경기부는 해방 직후 각 체육 종목별 협회가 발족되면서 창단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스포츠 경쟁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-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민간위탁(사무형)으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 애인체육회가 각각 수탁 중이며, 비장애인 23개 종목 25개팀 179명과 장

애인 8개 종목 8개팀 40명이 활동 중임.

## 2) 인권침해 실태

- 체육계는 성과 중심 근로계약과 열악한 처우 등 노동문제, 위계적 질서에서 비롯되는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있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, 합숙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,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매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  -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지도·감독의 방법 및 권한을 명시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임.
- 체육계가 추구하였던 엘리트체육과 경기실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스포츠인권 인식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‘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’ 결과를 종합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음.
  -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선수들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

현장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·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음.

#### 다.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(안 제10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▶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▶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▶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▶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제5조(인권보호 조치 등)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.
- 현행 “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”은 선수단의 폭력, 성폭력,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 선수 및 지도자가 해임 및 면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는 다소 미비한 실정임.
-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석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78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08일
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동욱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영한,  
박춘선, 박환희, 신복자,  
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 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 
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30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<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>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.(안 제10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등

#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인권보호 조치 등)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
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
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
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

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&lt;신 설&gt;</p> | <p><u>제10조의2(인권보호 조치 등) ①</u><br/> <u>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</u><br/> <u>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</u><br/> <u>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</u><br/> <u>이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</u><br/> <u>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</u></li> <li>2. <u>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</u><br/> <u>호 등을 위한 조치</u></li> <li>3. <u>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</u><br/> <u>위한 조치</u></li> <li>4. <u>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</u><br/> <u>를 위한 조치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</u><br/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</u></li> </ol> <p><u>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</u><br/> <u>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</u><br/> <u>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</u><br/> <u>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</u><br/> <u>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|